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증원한 한시정원(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현장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업인안전팀을 신설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업인안전보건팀을 폐지하면서 국립농업과학원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농업과학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14명(8급 14명)의 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사항”을 “사항(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농약품목·원제·농약제조업”을 “농약품목(수출농약을 포함한다)·원제·농약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설정 및 부산물 비료의 지정”을 “설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항”을 “사항(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 운반차량의 개인보호장비 등 점검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식량산업기술팀 및 청년농업인육성팀”을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식량산업기술팀·청년농업인육성팀 및 농업인안전팀”으로,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를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
1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 보급·지원
22. 축산·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3. 주요 우량 가축의 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업·농촌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보급

4의 2. 식물방제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 ⑪ 농업인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2. 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3. 농작업 안전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스마트팜개발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관리공학과·재해예방공학과·발농업기계화연구팀 및 농업인안전보건팀”을 “스마트팜개발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관리공학과·안전재해예방공학과 및 발농업기계화연구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을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으로,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을 “농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예방공학과장”을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재해”를 “농업시설, 생산기반 등 농업재해”로, “농업시설의 안전성·내구성”을 “안전성·내구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7. 농작업 편이·안전 증진 기술의 개발

8. 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사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9.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평가·저감기술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10.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인식 제고 등에 관한 연구

제37조제1항 단서 중 “3명(6급 3명)”을 “1명(6급 1명)”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한시정원)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및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343”을 “344”로 하고, 일반직 계 “342”를 “34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다음에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를 신설하며, 농업주사보 “9”를 “8”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3”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다음에 “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를 신설하며, 농업주사보 “8”을 “7”로 한다.

별표 4 중 행정서기 “22”를 “9”로 하고, 행정서기 9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행정서기 “20”을 “7”로 하고, 행정서기 7 다음에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 또는 농업연구사 14”를 신설하며,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를 “1명(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

연구사”로, “각각 별표 3의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을 “별표 3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과 같은 조 제6항제11호 및 제11항의 개정규정, 제15조제2항과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업인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농업인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자원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증원된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 1명(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

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1명(공업
서기 1명)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0]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1조 관련)

제41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정책국) ① ~ ④ (생 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 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 립·추진</u>	4. <u>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u>
5. <u>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u>직무육성 신제품 국내외 출 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 한 사항</u>	<삭 제>
⑥ 삭 제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⑦ ----- -----.
1. <u>농약의 품질관리·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1. ----- ----- <u>사항(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 자에 한한다)</u>
2. <u>농약품목·원제·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u>	2. <u>농약품목(수출농약을 포함한 다)·원제·농약제조업 -----</u>

물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 비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 7. (생 략)

8. 부정·불량 농약 단속에 관한 사항

9. ~ 13. 삭 제

<신 설>

<신 설>

14. (생 략)

⑧ 삭 제

⑨ (생 략)

제8조(농촌지원국) ① (생 략)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식량산업기술팀 및 청년농업인육성팀을 두며, 지도정책과장·기술보급과장·농촌자원과장 및 재해대응과장은 부이

3. ----- 설정 -----

--

5. ~ 7. (현행과 같음)

8. -----
-- 사항(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한한다)

14.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5.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 운반차량의 개인보호장비 등 점검에 관한 사항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농촌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도정책과·기술보급과·농촌자원과·재해대응과·식량산업기술팀·청년농업인육성팀 및 농업인안전팀

농촌지도관으

③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_____.

2. ~ 17. (현행과 같음)
1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삭 제

1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
급 및 지원

12. · 13. (생 략)

<신 설>

⑦ 삭 제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위생 및 가축분뇨처리에

의 이전 · 활용 계획 수립 · 추
진

19.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직무육성 신제품 국내외 출
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
한 사항

21.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
보급 · 지원

22. 축산 · 조사료에 관한 기술
의 보급 및 지원

23. 주요 우량 가축의 품종 보급
에 관한 사항

⑥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2. · 13. (현행과 같음)

14. 농업 · 농촌을 활용한 치유
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
-----.

<삭 제>

관한 기술 보급·지원

2. (생 략)

3. 삭 제

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보
급

5. 축산·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6. 주요 우량 가축의 품종 보급
에 관한 사항

⑨·⑩ (생 략)

<신 설>

제15조(농업공학부) ① (생 략)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
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
관리공학과·재해예방공학과·
밭농업기계화연구팀 및 농업인

2. (현행과 같음)

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보
급

4의 2. 식물방제관 및 손실보
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⑨·⑩ (현행과 같음)

⑪ 농업인안전팀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
급 및 지원

2. 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련 전
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3. 농작업 안전 관련 대내외 협
력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농업공학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스마트팜개발
과·에너지환경공학과·수확후
관리공학과·안전재해예방공학
과 및 밭농업기계화연구팀-----

안전보건팀을 두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재해예방공학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재해예방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농업재해 예방 및 농업시설 의 안전성 · 내구성 향상 연구

3. 4. 삭 제

5.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생 략)

⑧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기술의 개발

1의2.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농작업 유해요인 평가·저감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3.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 인식 제고 등에 관한 연구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사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9.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평가·저감기술 및 예방관리시스템 개발

10.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 인식 제고 등에 관한 연구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7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3명(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제41조(한시정원) ① 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②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및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해양

-- 1명(6급 1명)-----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한시정원) 농·축산물 영양정보 구축 및 식품영양정보 통합·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15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해예방공학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삭 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
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진
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로서 별표 5의 개정
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1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1명)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된 정원 1
명(행정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
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
·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
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1명) 및 별표 5의 정원 1
명(공업서기 1명)은 각각 2023
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2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

별표 3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
업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
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연
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행
정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 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행정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
명으로 본다.

----- 1명(행정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 농업연구사 -

----- 별표 3의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		.	
			<u>343</u>		<u>344</u>	+1
일반직 계	.		.		.	
	.		.		.	
			<u>342</u>		<u>343</u>	+1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		.		.	
	.		.		.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식품위생주사 또는 보건연구사</u>	.		.		.	
	.		.		.	
			<u><신 설></u>		<u>1</u>	+1
농업주사보	.		.		.	
	.		.		.	
			<u>9</u>		<u>8</u>	-1
	.		.		.	
	.		.		.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 • <u>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보건연구사</u> • • 농업주사보 • •	• • <u>3</u> • • <u><신 설></u> • • <u><신 설></u> • • <u>8</u> • •	• • <u>2</u> • • <u>1</u> • • <u>1</u> • • <u>7</u> • •	-1 +1 +1 -1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	· · <u>22</u>	· · <u>9</u>	-13
<u>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u> <u>또는 농업연구사</u>	<u><신 설></u>	<u>14</u>	+14
<u>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	· · <u>20</u>	· · <u>7</u>	-13
<u>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u> <u>또는 농업연구사</u>	<u><신 설></u>	<u>14</u>	+14
<u>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